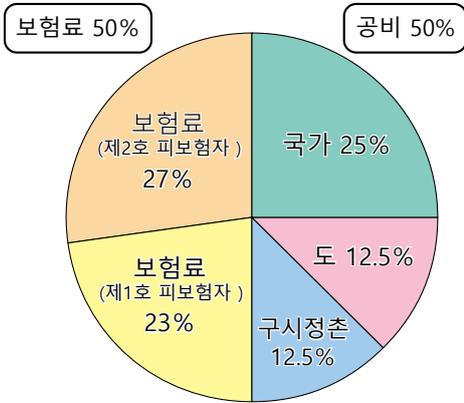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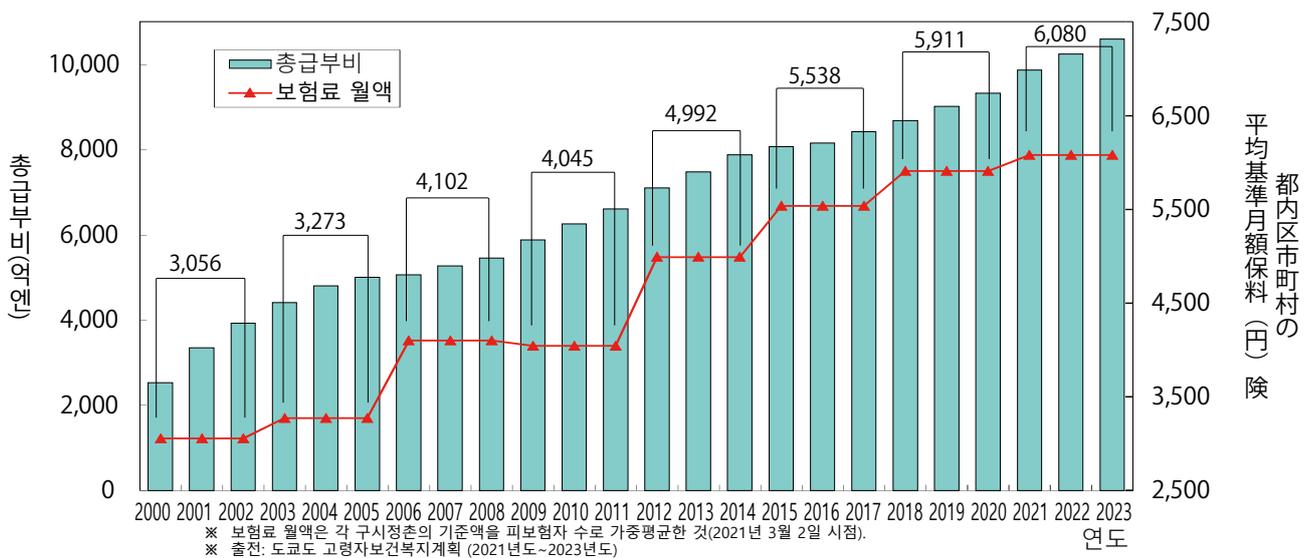


3. 개호보험의 재원 구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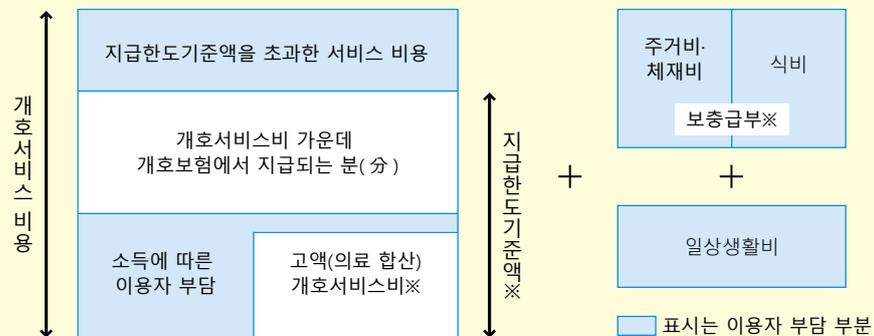


- ※ 왼쪽 그래프는 방문개호 등 재택계 서비스의 재원을 나타낸 것입니다. 개호보험시설·특정시설의 급부비는 국가 20%, 도 17.5%입니다.
- ※ 국가 부담분 중 5%는 조정교부금으로서 피보험자의 상황에 따라 배분되므로 구시정촌별 교부율이 달라집니다.

4. 개호보험급부의 증가와 보험료의 추이



● 이용자의 자기부담과 급부의 관계



- ※ 지급한도기준액·고액(의료 합산) 개호서비스비·보충급부에 대해서는 10-11 페이지 참조.
- ※ 일상생활비는 서비스의 일환으로 제공되는 일상생활상의 편의 가운데 일상생활에서 통상 필요하게 되는 비용을 말합니다(예: 이미용비, 교양오락비 등).